

예비심사보고서

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】

의안번호

927

2026. 4. 22.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. 4. 7.(남양주시장)

나. 회부일자 : 2026. 4. 7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(상정) 2026. 4. 20.~22. / (의결) 2026. 4. 22.

2. 예산안 규모

○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(일반+특별회계) 규모 (단위: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	비고
총 계	595,737,364	553,701,151	42,036,213	7.59%
일 반 회 계	574,985,525	545,379,142	29,606,383	5.43%
특 별 회 계	20,751,839	8,322,009	12,429,830	149.36%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왕은선)

□ 자치행정위원회 부서별 예산 편성

○ 총괄 세출예산안

-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.59%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, 특히 재정경제국과 문화교육국, 행정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큰 폭의 증액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.

- 재정경제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확대에 따라 35.72%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, 문화교육국은 체육시설 확충 및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 반영으로 10.04% 증가하였습니다. 행정국 또한 행정수요 변화 및 현안 사업 반영에 따라 21.4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.
- 전반적으로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일반회계 세출예산안

-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,453억 7,914만 2천 원에서 5.43% 증가한 5,749억 8,552만 5천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5.41%에 해당합니다.
- 주요편성 내용
 -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87억 2,965만 3천 원 보다 2.96% 증가한 89억 8,809만 8천 원이며, 시민안전보험 운영 2억 7,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.
 -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89억 5,254만 8천 원 보다 1.28% 증가한 90억 6,679만 5천원이며, 청년성장프로젝트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.
 -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59억 6,852만 5천 원 보다 0.25% 증가한 59억 8,349만 7천 원이며, 방송·영상 장비 유지관리 1,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.
 - 감사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억 6,433만 2천 원보다 3.04% 증가한 1억 6,933만 2천원이며,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.

-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,533억 6,389만 6천 원 보다 0.6% 증가한 2,548억 8,266만 6천 원이며, 경기도RISE사업 수행대학지원 1억 원, 버스정보안내기 확충 및 개선사업 5억 4,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.
- 행정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495억 5,049만 5천 원 보다 0.1% 감소한 495억 282만 원이며, 남양주시 새마을회 3,31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,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1억 3,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.
-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34억 2,210만 2천 원 보다 35.72% 증가한 453억 5,968만 2천 원이며,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6억 5,798만 원,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9억 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.
-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,347억 4,706만 3천원 보다 10.04% 증가한 1,482억 6,899만 4천 원이며,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4억 2,899만 3천 원,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83억 4,528만 원,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21억 2,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.
-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47억 7,429만 5천원 보다 13.74% 증가한 168억 451만 6천 원이며,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 1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.
- 행정복지센터 및 읍·면·동 소관 예산은 공무원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.

○ 특별회계

- 특별회계(공유재산관리)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3억 2,200만 9천 원에서 149.36% 증가한 207억 5,183만 9천 원으로 시 전체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17.95%에 해당합니다.

□ 종합의견

-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여건 변화와 국·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,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을 통해 기정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.
-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 10.23% 증가한 수준으로,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약 7.59% 증가하여 시 전체 재정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확대 편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.
- 일부 사업의 경우 단기간 내 집행이 필요한 추경예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, 또한 기존 예산의 조정 또는 집행잔액 활용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아울러, 특별회계의 경우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일회성 세입과 소송 대응 및 시설 조성 등 지출 수요가 크게 반영된 만큼, 자원 활용의 적정성과 향후 재정 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종합적으로,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

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재원을 보강하기 위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.

다만, 추경예산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의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,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심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회의록 참조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심사보고 요지

○ 없 음

7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